

의안번호	
의 퇴 인	김선민의원
회 답 일	2026.3.4.
추계번호	26B119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u>기술지원</u>)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6항 ¹⁾ 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49조의2제2항 신설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u>기술지원</u>)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 추

1) 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설치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금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3항²⁾에서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대상인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설치하여야 할 시설의 종류·사양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원대상의 범위가 불확정적이며,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 물량과 기존 지원대상 간의 중복 여부 및 규모를 현시점에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II.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2) 제16조의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 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금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비 지원사업 사례³⁾

□ 경기도 광명시(2025년)

- 사업명: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50만원(총 설치비 약 60만원 중 지원)
- 지원기준: 준공 후 13년 경과 공동주택

□ 인천광역시 서구(2025년)

- 사업명: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설치비의 일부 지원(지자체 심의 후 결정)
- 지원기준: 준공 후 20년 경과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 양천구(2025년)

- 사업명: 공동주택 안전개선 지원사업
- 지원내용: 사업비의 최대 90% 지원
- 지원기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3) 각 지방자치단체 공고 참고